

비교 환경법 국제센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자문 기관
유엔 환경 회의 옵서버*

환경권에 관한국제 규약 안

2024 년 3 월 28 일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서문

본 규약의 당사자,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 가족 구성원 모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토대임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가 인간¹의 고유한 존엄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승인하며,
2. 유엔 헌장에 따라 사람들은 더 큰 자유 속에서 사회 발전과 더 나은 삶의 수준을 증진하고²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장려하기로 결의하며,³
3.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모든 사람이 환경권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야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⁴
4.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며,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것은 국가, 개인, 기타 공공 및 민간 단체의 책임임을 재확인하며,⁵
5. 평화, 환경 법치,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환경 개발, 개발 권리, 지구의 경계 내에서 생존 가능한 지구에서의 환경 보호는 분리될 수 없다고 확신하며,⁶
6. 세계 인권 선언에 따라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⁷

¹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년 12월 16일("ICESCR"), 전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966년 12월 16일("ICCPR"), 전문.

² 유엔 헌장, 전문, 4항.

³ 유엔 헌장, 55조 및 세계 인권 선언, 1948년 12월 10일("UDHR"), 전문.

⁴ Ibid.

⁵ 1977년 12월 16일의 유엔 총회 결의 32/130 및 1986년 12월 4일의 41/117.

⁶ 1992년 6월 14일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리우 선언"), 원칙 25; 개발 권리에 관한 유엔 총회의 여러 결의안, 가장 최근인 2023년 12월 19일 결의안 78/203호;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가장 최근인 2022년 10월 6일 결의안 51/7호 등이 있다.

⁷ UDHR, 25-1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7. 환경은 토지, 물, 해양, 대기 및 우주 공간을 포함한 모든 차원으로 이해되며,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공적, 사적으로, 관습법에 따라 또는 공유재로서 보유되든 모든 환경 자원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며,
8. 인류와 자연이 직면한 위험,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야기된 재난의 빈도와 강도의 증폭, 물 다양성의 가속된 손실, 대기, 토지, 해양의 악화, 팬데믹 및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과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고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요인에 대하여 대하여 깊이 우려하며,⁸
9. 모든 인류에게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파괴는 종종 인권, 특히 생명권, 건강권, 물권, 식량권, 사생활 존중권, 절차적 권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을 확인하며,⁹
10. 또한 상호적으로, 일부 인권 침해는 환경 파괴를 동반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11. 인권은 환경 파괴에 직면한 회복탄력성의 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하며,¹⁰
12. 모든 사람이 인간과 자연 생태계의 공생 관계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며 자연과 조화롭게 지구의 경계 내에서 살아갈 권리에 주목하며¹¹,

⁸ 세계 인류 권리 선언 초안, 전문, 7장, 제시자 F. Hollande, 프랑스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2016년 4월 28일; 유엔 총회 결의 78/153 -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인류를 위한 지구 기후 보호, A/RES/78/153, 2023년 12월 19일;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 53/6 - 인권과 기후 변화, A/HRC/RES/53/6, 2023년 7월 12일; 인권 및 환경 특별보고관의 주제 보고서: 독성 오염(A/HRC/49/53, 2022), 건강한 식품(A/76/179, 2021), 물 위기(A/HRC/46/28, 2021), 깨끗한 공기(A/HRC/40/55, 2019), 기후변화(A/74/161, 2019, A/HRC/31/52, 2016), 생물다양성(A/HRC/34/49, 2017); 미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인권과 환경 보전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 요약, A/HRC/52/44, 2022; 유해 물질 및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및 폐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기후변화(A/HRC/54/25, 2023), 원주민의 권리(A/77/183, 2022), 광업(A/HRC/51/35, 2022), 플라스틱(A/76/207, 2021); 기후변화 맥락에서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첫 번째 보고서(A/77/226, 2022).

⁹ 데이비드 R. 보이드, 인권은 건강한 생물권에 달려 있다, A/75/161, 2020; 틀라렝 모포켄, 식량, 영양 및 건강할 권리, A/78/185, 2023.

¹⁰ 유럽평의회, 재난 위험 감소와 사람들의 회복력에 관한 윤리적 원칙, EUROPA, 스트라스부르, 2011.

¹¹ 스톡홀름 선언, 원칙 1; 리우 선언, 원칙 1; 1998년 환경 문제에서의 정보 접근,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 참여 및 사법 접근에 관한 오르후스 협약("오르후스 협약"), 1조;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24조; 2018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알 권리, 대중 참여 및 재판을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13.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이후 존재하는 국제적 합의를 상기하며, 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환경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이는 유엔 총회 결의 76/300과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 이사회 결의 48/13에서 더욱 정교화되고 완전히 인정되었으며,
14. 건강한 환경에 대한 인권은 여러 국제 및 지역 협약과 유엔 회원국 대다수의 헌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15. 결사의 자유, 환경권을 수호할 권리, 정보, 참여, 재판받을 권리가 국제 및 지역 인권 기구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16. 평화, 개발, 환경의 보호는 상호 의존적이며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임을 인식하고,¹²
17.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에 대한 국제 규범을 보편적 규약으로 제정하여 국가, 개인, 기타 공공 및 민간 단체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 다음의 조항에 동의한다:

제 1 장: 권리와 의무

제 1 조.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과 모든 인민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여기에는 특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기후,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무독성 환경, 깨끗한 공기, 안전하고 충분한 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건강한 식품이 포함된다.
2.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개인 및 집단의 건강, 안전, 안보, 생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존중되고, 보호 받아야 한다.¹³

받을 권리에 관한 에스카주 지역 협정("에스카주 협정"), 제 1 조; 유엔 총회 결의 76/300;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48/13.

¹² 리우 선언, 원칙 25.

¹³ 스톡홀름 선언, 제 1 원칙; 리우 선언, 제 1 원칙; 오르후스 협약, 1 조;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24 조; 에스카주 협정, 1 조; 유엔 총회 결의 76/300;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48/13.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3.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의 실현과 향유는 자연의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집행에 기반한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서 인간과 자연 생태계 간의 공생관계를 통해 촉진되어야 한다.
4. 모든 사람과 모든 인민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제 2 조. 환경 관련 인권

1. 모든 사람과 모든 인민은 환경과 관련된 특히 다음과 같은 인권을 보유한다:
 - a) '원헬스' 접근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웰빙에 도움이 되는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¹⁴
 - b) 위생과 소독에 적절하고 공평하며 저렴한 식수를 공급받을 권리;
 - c)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한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권리, 그리고
 - d) 적절하고 위생적이며 저렴한 주택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환경 피해에 가장 취약하거나 특히 이들이 처한 필요, 위험 및 역량을 고려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¹⁵.

제 3 조. 더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 및 후퇴금지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과 모든 인민은 더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와 이미 달성한 수준에서 후퇴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¹⁶

¹⁴ ICESCR, 12 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제 14 호, 2000; 2030 의제, SDG 3; 유엔환경총회 결의안 3/4 - 환경과 건강, UNEP/EA.3/Res.4, 2018년 1월 30일;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51/21 -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누릴 모든 사람의 권리, A/HRC/RES/51/21, 2022년 10월 7일.

¹⁵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 A/HRC/37/59(2018), 원칙 14.

¹⁶ Rio+20 결과 문서, 2012, 20항. 존 H. 녹스 보고서 A/HRC/25/53, 2013년 12월 30일, 30항. 55; A/HRC/31/52, 2016년 2월 1일, 67, 68, 75절; 2012년 제제 세계총회 결의안 5.128 및 2016년 하와이 세계총회 결의안 0.82; 2011년 9월 29일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를 앞두고 유럽연합의 공동 입장 개발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단락. 97; IUCN,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 규약 초안, 2015("IUCN 초안"), 10조; 파리 기후 협약, 4.3조; 에스카주 협정, 3-c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2. 당사국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¹⁷ 이러한 조치는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거나 인체 건강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활동 및 물질을 직간접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전하거나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¹⁸

제 4 조. 환경 파괴를 방지할 권리¹⁹

1. 모든 사람과 모든 인민은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²⁰
2. 이를 위해 모든 사람과 모든 인민은 환경 파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개인과 모든 인민은 물론 당사국은 사법관할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활동과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활동이 어떤 사법관할권도 미치지 않는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5 조. 사전주의 조치에 대한 권리²¹

1. 환경 파괴를 방지하거나 본 규약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본 규약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따라 사전주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2.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은 필요한 사전주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환경 파괴에 대한 구제 및 피해 보전 권리

1. 모든 사람과 모든 인민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비용과 환경 파괴를 복구하는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²²

¹⁷ 리우 선언, 원칙 11.

¹⁸ 리우 선언, 원칙 14; IUCN 초안, 18 조.

¹⁹ 스톡홀름 선언, 원칙 21; 리우 선언, 원칙 2; IUCN 초안, 14 조.

²⁰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 A/HRC/37/59(2018), 제 1 원칙과 제 2 원칙.

²¹ 리우 선언의 원칙 15, 6 조. 세계자연보전연맹 초안; 5 조, 2005 프랑스 환경 헌장, 5 항. 158 리우+20 결과 문서; 3-3 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 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1 항, 생물 안전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1 항. 1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7-e 조,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지역의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BBNJ 협정").

²² 리우 선언, 원칙 16; 국제 수로의 비항해적 이용에 관한 협약, 21 조; IUCN 초안, 29 조; 예방 및 오염 통제 비용과 환경 피해 비용의 내재화에 관한 1991년 OECD C(90)177(최종) 권고.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2. 모든 사람과 모든 인민은 환경 피해에 대해 기초적으로 이전 상태로 복원하거나²³ 그러한 피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7 조.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에 대한 권리²⁴

1. 모든 사람과 모든 인민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방해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계획, 프로그램, 정책 및 활동에 대해 사전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²⁵

2. 환경 및 사회적 영향 평가에는 국경을 초월한 영향과 잠재적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관련 당사국에 통보하고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한다.

제 8 조. 자연과 환경의 지속성에 조화로운 개발에 대한 권리²⁶

1.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은 자연 및 환경의 지속성과 조화롭게 발전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며, 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분리할 수 없고 상호의존되어 있다.

2. 자연 및 환경의 지속성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당사국은 본 규약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채택한다.

²³ 스톡홀름 선언, 원칙 21; 리우 선언, 원칙 2; 국제사법재판소, 국경 지역에서 니카라과가 수행한 특정 활동(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2018년 2월 2일.

²⁴ 리우 선언, 원칙 17 및 19; IUCN 초안, 46 조; 존 녹스 보고서, A/HRC/25/53, 2013년 12월 30일, 30장; 초국경적 맥락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에스포 협약 및 전략적 환경평가에 관한 키에프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14-1 조; UNFCCC, 4-1 조; 해양법 협약, 206 조; BBNJ 협정, 제 4 부; 국제사법재판소, 우루과이 강의 펄프 공장(아르헨티나 대 우루과이), 2010년 4월 20일.

²⁵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 A/HRC/37/59(2018), 원칙 8.

²⁶ 개발 권리에 관한 선언, 유엔 총회 결의 41/128, 1986년 12월 4일; 인권과 인민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22 조; 아프리카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인권 및 인민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 대한 의정서, III 조; 리우 선언, 원칙 3; 인권이사회 결의 53/28 - 모든 인권의 향유를 위한 개발의기여, 2023년 7월 14일; 개발권에 관한 국제 규약 초안, 개발권 실무그룹 의장-보고관의 보고서, A/HRC/54/50, 2023년 7월 18일, 4 조; IUCN 초안, 11 조; 2030 의제, 35 절.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3.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보호될 수 있도록 당사국은 모든 공공 정책과 모든 개발 과정에 장기적인 환경의 지속성을 통합하도록 감시한다.²⁷

제 9 조.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 및 표현과 관련된 권리²⁸

1. 모든 사람과 모든 인민은 환경에 대한 의견을 갖고 표현하며, 아이디어와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다.
2. 당사자는 이러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 10 조. 환경 정보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과 인민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 없이 유해 물질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저렴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하게 접근하고 이를 획득하고 전파할 권리가 있다.²⁹
2. 당사자는 최대 공개 원칙에 따라 소유, 관리 또는 보관 중인 환경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을 보장한다.³⁰
3. 이러한 정보는 정보 통신 기술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된다.³¹
4. 당사국은 특히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집단의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토착민 및 부족의 인정된 권리를 고려하여 그들의 조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제공 절차를 수립한다.³²

²⁷ 2030 의제, 18, 50, 53 장; UNEP 이사회 결정 27/9 -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의, 거버넌스 및 법의 발전, UNEP/GC.27/17, 2013년 3월 12일; 리우 선언, 원칙 3 및 4.

²⁸ UDHR, 19 조; ICCPR, 19 조;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0/15 - 의견과 표현의 자유, A/HRC/RES/50/15, 2022년 7월 8일.

²⁹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 A/HRC/37/59(2018), 원칙 7.

³⁰ 에스콰주 협정, 5.1 조.

³¹ UDHR, Art. 19; ICCPR, Art. 19; 오르후스 협약, 4 조 및 5 조; 에스카주 협약, 5 조 및 6 조; 유엔 총회 결의 78/243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보 및 통신 기술, 2023년 12월 22일.

³² 에스콰주 협정, 5.3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5. 당사국은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할 당국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환경 정보를 생성, 수집, 공개 및 전파하고 이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보장한다.³³

제 11 조. 환경 관련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³⁴

1. 모든 사람과 인민은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의 개별적 행정 결정 또는 일반적인 결정에 관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참여권은 특히 환경 보호, 이용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 전략,³⁵ 계획, 프로그램, 정책 및 법률의 의사 결정에 적용된다.

3. 당사국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리적 및 성별 특성에 맞게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³⁶에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중의 권리를 보장한다.³⁷

4. 당사국은 환경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대중의 참여 결과를 정당하게 고려한다.

제 12 조. 환경 문제에서 사법에 대한 접근권³⁸

1. 모든 사람과 인민은 보복, 위협 또는 폭력 없이 본 규약에서 보호하는 환경 및 권리의 보호와 회복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법기관 또는 기타 독립적인 기관에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청구를 할 권리를 가진다.³⁹

2. 국경을 넘는 환경 피해의 피해자는 피해의 발산지 당사국의 구제방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⁴⁰

³³ 에스콰주 협정, 6.1 조.

³⁴ 오르후스 협약, 6-8 조 및 8 조; 에스카주 협정, 7 조.

³⁵ 에스콰주 협정, 7.3 조.

³⁶ 에스콰주 협정 7.2 조.

³⁷ 에스카주 협정 7.10 조.

³⁸ 에스콰주 협정 8 조.

³⁹ UDHR, 8 조; ICCPR, 2-3 조; 2005년 12월 16일 유엔 총회 결의 60/147호 "중대한 국제인권법 위반 및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 리우 선언, 10항; 오르후스 협약, 9-4 조; IUCN 초안, 61 조; 에스카주 협정, 8 조;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원칙, A/HRC/37/59(2018), 원칙 10.

⁴⁰ IUCN 초안, Art. 62; 산업재해의 초국경적 영향에 관한 헬싱키 협약, 9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3.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무료 언어, 기술 및 법률 지원을 포함한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취약한 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집단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⁴¹

제 13 조. 환경 교육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환경 및 기후 문제에 대한 평생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⁴²
2. 환경 교육은 균형 잡힌 환경 이용과 자연 환경을 존중하는 다양한 관리 방법에 관한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둔다.

제 14 조. 환경 문제에서의 성 평등 및 증진 조치

1. 모든 사람은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성 평등과 성인지 조치에 대한 권리가 있다. 모든 성별의 사람들은 자립화, 경영진, 의사 결정, 완전하고 동등하며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천연 자원의 관리자, 리더, 수호자 및 환경 보호의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⁴³
2. 당사국은 성적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규범과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성에 기반한 차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하는 성적 평등 증진 조치를 이행한다.

⁴¹ 에스콰주 협정, 8.5 조.

⁴² ICESCR, 13 조; IUCN 초안, 54 조;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53/7 - 교육받을 권리, A/HRC/RES/53/7, 2023년 7월 12일, 전문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교육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교육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엔 총회 결의 78/156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A/RES/78/156, 2023년 12월 19일은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재난에 강한 지역사회 구축에 대한 [...]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보기: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 A/HRC/37/59 (2018), 원칙 6.

⁴³ 유엔 총회 결의안 76/300(2022) 2 쪽.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제 15 조. 아동 및 청소년의 환경 권리⁴⁴

1. 어린이와 청소년은 깨끗한 공기, 안전하고 안정적인 기후, 건강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안전하고 충분한 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음식, 무독성 환경을 포함하여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특히 생명,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 위험과 환경오염의 위험을 고려한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적절한 생활 수준과,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⁴⁵
2. 아동과 청소년은 법률, 명령, 정책, 규정, 지침, 계획, 전략, 예산, 국제 협약 및 개발 원조 제공을 포함한 환경 관련 결정이 자신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질 권리를 보유한다. 환경 관련 결정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⁴⁶
3. 아동과 청소년은 특히 교육에 의해 자신의 운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립능력에 필수적인 효과적인 구제 수단과 함께 알 권리, 의사 결정에 대한 참여권, 아동 친화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⁴⁷

제 16 조. 환경 인권 수호자의 권리⁴⁸

1. 고발자를 포함한 환경 인권 수호자들은 방해와 불안감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⁴⁹

⁴⁴ 아동의 권리와 환경에 관한 일반 논평 26 호(2023), 특히 기후 변화에 초점을 맞춘 CRC/C/GC/26,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45/30 - 아동의 권리: 건강한 환경을 통한 아동의 권리 실현, 2020년 10월 7일, 유엔 총회 결의안 78/187 - 아동의 권리, 2023년 12월 19일.

⁴⁵ 일반 논평 26 번, 단락. 63-64.

⁴⁶ 같은 문단. 1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3 조 참조. 3.

⁴⁷ Ibid. 66.

⁴⁸ 유엔 총회 결의 78/216 - 인권 옹호자에게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를 보장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개인, 집단 및 사회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 이행, A/RES/78/216, 2023년 12월 19일; 인권이사회 결의 40/11 - 인권의 향유,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환경 인권 옹호자들의 기여 인정, A/HRC/RES/40/11, 2019년 3월 21일; 에스과주 협정, 9 조.

⁴⁹ 인권이사회 결의 40/11 - 인권의 향유,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환경 인권 옹호자들의 기여 인정, A/HRC/RES/40/11, 2019년 3월 21일, 2 항.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2. 환경 인권 수호자들은 특히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필수적인 의견, 표현,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행사할 때 보호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⁵⁰
3. 당사국은 국제적 의무, 헌법 원칙 및 법률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포함하여 인권 분야에서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여 생명권, 개인적 완전성, 의견 및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및 결사, 자유로운 이동, 알 권리 행사 능력을 포함하여 환경 인권 수호자의 모든 권리를 인정,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⁵¹
4. 당사국은 환경인권 수호자들이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 겪을 수 있는 공격, 위협 또는 협박을 예방, 조사 및 처벌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⁵²
5. 모든 사람과 인민은 생태적 비상 상황에서 비폭력 시민 불복종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제 17 조. 원주민 및 부족민의 환경권

1. 원주민과 부족민은 고유한 분리된 집단으로서, 그리고 그들의 전통과 관습으로 인해 그들의 내생적 법적 질서를 고려하여 환경, 토지, 영토, 자원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⁵³
2. 원주민 및 부족민은 자신의 토지, 영토 및 자원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균분할 권리가 있다.⁵⁴
3. 원주민과 부족민은 생존과 문화에 필수적인 천연 자원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토지, 영토에서 유전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이익을 균분할 권리가 있다.

⁵⁰ 2 항에서.

⁵¹ 에스콰주 협정, 9 조.

⁵² Ibid.

⁵³ 리우 선언, 원칙 22; IUCN 초안, 16 조; 유엔 총회 결의 61/295 -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2007년 9월 13일, A/RES/61/295; 유엔 총회 결의 78/189 - 원주민의 권리, 2023년 12월 19일, A/RES/78/189;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1/18 - 인권과 원주민, 2022년 10월 6일, A/HRC/RES/51/18.

⁵⁴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 A/HRC/37/59(2018), 원칙 15.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4. 원주민과 부족민은 강제 이주 시 생계와 생활 방식에 따라 자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안전한 거주지를 확보할 권리가 있다.
5. 원주민과 부족민은 자신의 환경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참여하고 동의할 권리가 있다.⁵⁵

제 18 조.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 및 환경 이주자의 권리

1. 재난에 취약한 사람은 건강과 환경에 관한 현재의 위험과 이전의 손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받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보 시스템과 긴급한 구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⁵⁶
2. 당사국은 본 규약과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규정된 모든 인권이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보장되도록 감시한다.
3. 모든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권리는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갑작스럽거나 점진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민에게 보장된다.
4. 국내 및 외국에서의 이주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주 기간 동안 "합법적이고 안전한 체류"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법적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다.⁵⁷

제 19 조. 차별 금지

당사국은 인종, 성별, 연령,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상황에 근거한 차별 없이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⁵⁸

⁵⁵ ILO 원주민 및 부족민 협약, 1989년(제 169호).

⁵⁶ 리우 선언, 원칙 18; 국제법위원회, 재난 발생 시 인명 보호에 관한 조항 초안, 2016("ILC 초안"), Art. 9-2; 유럽인권재판소, 타타르 대 루마니아 사건, 2009.1.27, para. 122; 2030 의제, SDGs 11 및 13.

⁵⁷ 환경이주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초안, 제 4 판, 2018 (<https://drive.google.com/file/d/1yRc7aggqpZicRFOLPS56n6f12tZWkhQI/view>); 존 H. 녹스 A/HRC/31/52 보고서, 2016년 2월 1일, 단락. 24 및 61.

⁵⁸ ICESCR, 2-2 조; ICCPR, 26 조; IUCN 초안, Art. 62; 인권과 환경에 관한 기본 원칙, A/HRC/37/59(2018), 원칙 3.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제 20 조. 형평성 및 연대

당사국은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가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가지고 행사될 수 있도록 감시한다. 당사국들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고려하여 의무를 이행한다.⁵⁹

제 2 장: 국제 협력

제 21 조. 협력 의무

1. 당사국은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의 실현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 및 개별 조치를 통해 서로 협력한다.
2. 이를 위해 당사국은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 위험 및 역량을 고려하여 지구 시스템의 건강과 본래상태를 모니터링, 평가, 보존, 보호 및 복원하기 위해 각자의 역량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의 정신과 선의로 협력한다.
3. 본 규약의 당사국은 환경 협약 및 환경과 관련된 기타 국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모든 인민의 환경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2 조. 환경권 이행을 위한 지원 제공 의무

본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국은 지식 및 모범 사례의 교환, 대중의 인식, 제도적 및 법적 강화, 기술이전, 역량 강화 및 시민사회와의 참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필요에 따라 다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조치를 취한다.⁶⁰

제 23 조.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협력

1. 당사국은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및 기후 비상사태와 자국의 사법관할권 또는 통제권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그 위험에 대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에 신속히 통지한다.

⁵⁹ 세계 자연 헌장, 원칙 1-6; UNFCCC, 3-1 조; IUCN 초안, 5 조;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37 조; 에스카주 협정, 3 조; BBNJ 협정, 7 조.

⁶⁰ ICESCR, 제 2 조 1 항; 리우 선언, 원칙 9.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2. 당사국은 모든 관련 주민에게 즉시 알리고 그러한 재난 및 비상사태의 유해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와 초기 단계에서 성실하게 협의한다.⁶¹
3. 당사자들은 구조 및 구호 활동에서 인권과 생태계의 완전성을 존중하도록 서로를 돕고 감시한다.⁶²

제 3 장: 구현

제 24 조. 효과적인 이행의 의무

당사국은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채택한다.

제 25 조. 권리 제한에 대한 억제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의 향유는 이러한 권리의 성질에 부합하고 민주 사회에서 환경 보호 및 일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한 될 수 있다.⁶³

제 26 조. 규약의 해석 및 적용

1. 본 규약의 어떠한 내용도 국가, 기관,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이 본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나 자유를 손상시키거나 본 규약에 규정된 것보다 더 큰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거나 행위를 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⁶⁴
2. 본 규약의 어떠한 조항도 본 규약에 보장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⁶¹ IUCN 초안, 제 19 조.

⁶² 리우 선언, 원칙 18; ILC 초안, 11, 12 조; IUCN 초안, 19 조; 샌다이 재해위험경감 프레임워크 2015-2030; 유엔 총회 결의안 77/164 - 재해위험경감, A/RES/77/164, 2022년 12월 14일.

⁶³ ICESCR, 4 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산살바도르 의정서, 5 조; 유럽인권협약, 8 조; 인권이사회 결의 52/22 -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 2023년 4월 3일.

⁶⁴ ICESCR, 5-1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3. 본 규약은 당사국 또는 국제법에서 인정되는 자연권 또는 그러한 요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⁶⁵
4. 다음 원칙은 본 규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해석의 지침이 된다:⁶⁶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역량 원칙,⁶⁷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세대 간의 권리, 모든 인류와 환경의 상호의존성.⁶⁸
5. 본 규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모든 의문은, 자연 보호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완전한 환경권 향유를 가장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 한다.⁶⁹

제 4 장 :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

제 27 조. 환경권 위원회

1. 환경권 위원회 (이하 위원회) 는 본 규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 위원회는 도덕성이 높고 환경권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은 18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들이 공평한 지리적 분포와 균형 잡힌 성별 대표성의 원칙과 다양한 문명 형태와 주요 법률 체계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자국민 중에서 선출하며, 개인 자격으로 봉사한다.
4. 위원회 위원은 당사국들이 지명한 명단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한 명의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첫 번째 선거는 본 규약 발효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2 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 최소 4 개월 전에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에게 2 개월 이내에 후보를 제출하도록 초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이후

⁶⁵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우간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자연의 권리는 헌법 및/또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⁶⁶ 스톡홀름 협약, 전문, 단락. 13; 파리 기후 협약, 전문, 3 절; UNFCCC, 3 조.

⁶⁷ 리우 선언, 원칙 7.

⁶⁸ 특히 물세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1971 년, 1982 년 및 1987 년 개정), 전문.

⁶⁹ 환경 법치에 관한 IUCN 세계 선언(2016), 원칙 5.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모든 사람을 알파벳순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을 지명 한 당사국을 표시하여 본 규약의 당사국들에게 통지한다.

6. 선거는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정족수를 구성하는 회의에서 위원회에 선출되는 사람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과 출석 및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절대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다.
7.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첫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명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되며, 첫 선거 직후 의장이 추첨을 통해 5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8. 위원회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했던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지명하여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하도록 한다.
9. 위원회는 내규를 정한다.
10. 위원회는 2년의 임기로 임원을 선출한다.
11. 위원회의 회의는 일반적으로 유엔 본부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 기간은 필요한 경우 유엔 총회의 승인에 따라 본 규약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하고 수정한다.
12. 유엔 사무총장은 본 규약에 따른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 한다.
13.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위원은 총회가 정하는 조건과 방식에 따라 유엔 기금에서 수당을 지급받는다.⁷⁰

제 28 조. 위원회에 보고⁷¹

1. 본 규약의 당사국은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의 존중을 보장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와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2. 보고서에는 취해진 조치의 효과와 당사국이 본 규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직면한 어려움을 기술한다.

⁷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3 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34 조.

⁷¹ ICCPR, 40 조; ICESCR, 17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3. 모든 보고서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경제사회이사회와 위원회에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4. 유엔 사무총장은 위원회와 협의한 후 해당 전문기관에 해당 전문기관의 소관 분야에 해당하는 보고서 사본 또는 그 일부를 송부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모든 보고서를 검토하고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할 책임이 있다.
6. 당사국은 제 5 항에 따른 권고 또는 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에 대한 언급에 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29 조. 국가 간 통지

본 규약의 모든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본 규약 위반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30 조. 개인별 민원

1. 위원회는 당사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당사국의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 또는 의무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모든 민원을 조사해야 한다.
2. 민원은 작성자가 그러한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대리 제출할 수 있다.⁷²

제 31 조. 절차

제 29 조 및 제 30 조에 따라 제출된 민원은 본 규약의 부속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 32 조. 보호 조치

당사국은 본 규약 제 29 조 및 제 30 조에 따라 민원위원회에 제출한 결과로 사법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이 어떠한 형태의 학대 또는 협박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⁷³

⁷² ICESCR, 선택의정서, 2 조.

⁷³ ICESCR, 선택의정서, 13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제 33 조. 전문가 위원회

1.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유엔 전문기관, 기금 및 프로그램, 기타 권한 있는 기관에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민원 및 문의에 관한 견해 또는 권고와 함께 이러한 견해 또는 권고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및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달한다.
2.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본 규약에 따라 조사한 민원에서 발생하는 각 기관이 본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 진전을 달성하도록 당사국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국제 조치의 타당성에 대해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해당 기관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3. 신탁기금은 유엔 총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설립되며, 유엔의 재정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당사국의 동의 하에 당사국에 본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이행 강화를 위해 전문가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본 협약의 맥락에서 환경권 분야의 국가 역량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관리된다.
4. 본 조의 규정들은 본 규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⁷⁴

제 34 조. 위원회의 연례 보고서

위원회는 연례 보고서에 본 규약에 따른 활동의 요약서를 포함시킨다.⁷⁵

제 5 장: 최종규정

제 35 조. 서명, 비준, 승인, 수락 및 가입

1. 본 규약은 모든 유엔 회원국 및 그 전문 기관과 _____ 에서부터 _____⁷⁶ 까지의 지역 통합 기구에게 서명이 열려 있다.

⁷⁴ ICESCR, 선택의정서, 14 조.

⁷⁵ ICESCR, 선택의정서, 15 조.

⁷⁶ ICESCR Art. 26;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42 조; BBNJ 협정, 65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2. 본 규약은 국가 및 지역통합기구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을 거쳐야 한다. 이 규약은 서명을 마감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가 및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해 공개된다. 비준, 승인, 수락 및 가입 문서는 접수국에 접수된다.⁷⁷
3. 접수국은 본 규약에 서명하고 본 규약을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 및 지역통합기구에게 각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증서의 접수 사실을 통보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특정 지역의 주권국가에 의해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이 본 규약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대한 권한을 이양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은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문서에서 본 규약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권한의 범위를 선언해야 한다. 그 후, 해당 기관은 권한 범위에 대한 관련 변경 사항을 접수국에 통보해야 한다.⁷⁸
5. 본 규약에서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해당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역 통합 조직을 포함한다.⁷⁹
6. 지역통합기구는 자신의 권한 내에 있는 사안에 대해 본 규약의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조직은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⁸⁰

제 36 조. 발효

1. 본 규약은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서약서가 접수처에 접수된 후 30 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30 번째 비준서 접수 후 본 규약을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경우, 본 규약은 해당 비준서 접수일로부터 30 번째 날에 발효한다.⁸¹
3. 상기 1 항 및 2 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가 접수시킨 서류는 해당 기구의 회원국이 접수시킨 서류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⁸²

⁷⁷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43; BBNJ 협정, 66 조.

⁷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44-1; BBNJ 협정, 67-2 조.

⁷⁹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44-2 조.

⁸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44-4 조; BBNJ 협정, 64-2 조.

⁸¹ 장애인의 권리 협약, 45 조; BBNJ 협정, 68-2 조.

⁸²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44-3 조; BBNJ 협정, 68-3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제 37 조. 임시 적용

1. 본 규약은 비준, 승인, 수락 또는 가입 문서의 서명 또는 접수 시 접수처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잠정 적용에 동의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의해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잠정 적용은 접수처가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의 잠정적용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한 본 규약의 발효 또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가 잠정적용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접수처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시점에 종료된다.⁸³

제 38 조. 접수국

유엔 사무총장은 본 규약의 접수처다.⁸⁴

제 39 조. 유보

본 규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⁸⁵

제 40 조. 개정

1. 본 규약의 모든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하여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 후 사무총장은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그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소집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요청한다. 그러한 의사 소통 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3 분의 1 이상이 그러한 회의를 찬성하면 사무 총장은 유엔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과반수가 채택한 개정안은 유엔 총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⁸⁶
2. 개정안은 유엔 총회에서 승인되고 본 규약 당사국의 3 분의 2 가 수락하면 발효된다.

⁸³ BBNJ 협정, 69 조;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의 예방, 억제 및 철폐를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2009), 제 32 조.; 횡단성 어족자원 및 회유성 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1995), 제 41 조. 41;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제 11 부 이행에 관한 협정(1994), 7 조.

⁸⁴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41 조.

⁸⁵ 생물 다양성 협약, 37 조; UNFCCC, 24 조; 파리 기후 협약, 29 조; 에스카주 협정, 23 조.

⁸⁶ ICESCR, 29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3. 1항에 따라 채택 및 승인된 모든 개정안은 접수된 수락 증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기준 당사국들 수의 3분의 2에 도달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그 후, 개정안은 당사국들이 자신의 수락서를 접수시킨 후 30일째 되는 날에 각 당사국에게 발효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들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⁸⁷

제 41 조. 접수처의 통지

제 35 조 3항에 규정된 통지에도 불구하고 접수처는 제 35 조 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 및 지역통합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a) 본 규약에 대한 서명 및 제 35 조에 따라 접수된 비준, 승인, 수락 및 가입 문서;
- b) 제 36 조에 따라 본 규약이 발효되는 날과 제 40 조에 따른 모든 개정안의 발효일.

제 42 조. 진본 텍스트

1. 본 규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원문이 동등하게 진본이며, 유엔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접수처는 본 규약의 인증 사본을 제 35 조 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 및 지역통합기구에 송부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래 서명된 전권 대표들은 각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본 규약에 서명하였음.

⁸⁷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47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부칙 -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A - 개별 이의신청****제 1 조. 제출**

본 규약 제 30 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개인 또는 개인들 집단 또는 당사국의 사법 관할 내에서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 침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명의로 개인 또는 개인들 집단이 제출할 수 있다. 개인 또는 개인들 집단들을 대신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작성자가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⁸⁸

제 2 조. 당사자 적격

1.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 수단이 모두 소진되었음을 확인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검토하지 않는다. 단, 그러한 구제책의 적용이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의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선언한다:
 - a) 신청인이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구제 수단이 소진된 후 1년 이내에만 제기될 수 있다;
 - b) 해당 사실이 해당 날짜 이후에도 계속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해당 당사자에게 본 규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
 - c)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다른 국제 조사 또는 합의 절차에 따라 검토되었거나 검토 중인 경우에는;
 - d) 본 규약의 조항과 양립할 수 없고;
 - e)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거나, 매스미디어에서 유포한 보도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거없는 것으로 되며;
 - f) 이의신청을 제기할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되는 것은,
 - g) 익명이거나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이다.⁸⁹

⁸⁸ ICESCR, 선택의정서, 2 조.

⁸⁹ ICESCR, 선택의정서, 3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제 3 조. 명백한 불이익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작성자가 명백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해당 이의신청의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⁹⁰

제 4 조. 임시 조치

1. 위원회는 이의신청서의 접수 후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언제든지 긴급한 조사를 위해 당사국이 위반 혐의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청구를 관련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제 1 항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당사자적격 또는 이의신청의 본안에 대하여 사전판단 하는 것은 아니다.⁹¹

제 5 조. 전송

1. 위원회가 해당 당사자의 의견청취 없이 이의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신청서류를 해당 당사자에게 비밀리에 전달해야 한다.
2. 6 개월 이내에, 당사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당사자가 취한 교정조치를 설명하는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는 설명 또는 선언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한다.⁹²

제 6 조. 화해

1. 위원회는 본 규약에 명시된 의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문제의 화해에 도달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에게 중재장소를 제공한다.
2. 모든 화해에 대한 합의는 본 규약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⁹³

⁹⁰ ICESCR, 선택의정서, 4 조.

⁹¹ ICESCR, 선택의정서, 5 조.

⁹² ICESCR, 선택의정서, 6 조.

⁹³ ICESCR, 선택의정서, 7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제 7 조. 조사

1. 위원회는 본 규약 제 30 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문서가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서들이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었는지를 조사한다.
2. 위원회는 본 규약에 따라 통지된 문서를 비공개로 조사한다.
3. 위원회는 본 규약에 따라 통지된 문서를 조사할 때, 지역인권체계를 포함하여 다른 유엔 기구, 전문기관, 기금, 프로그램 및 메커니즘, 기타 국제기구에서 나온 관련 문서와 관련 당사국의 견해 또는 의견을 적절히 참고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본 규약에 따른 통지를 조사할 때, 당사국이 본 규약 제 1 장에 따라 취한 조치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정책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⁹⁴

제 8 조. 후속 조치

1. 위원회는 통지서를 검토한 후 해당 통지에 대한 의견과 함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2.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6 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견해 및 권고사항에 비추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 답변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본 규약 제 28 조에 따른 당사국의 후속 보고서에서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위원회의 견해 또는 권고에 대응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관련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⁹⁵

B - 국가 간 통지

제 9 조. 절차

본 규약 제 29 조에 따른 국가 간 통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⁹⁴ ICESCR, 선택의정서, 8 조.

⁹⁵ ICESCR, 선택의정서, 9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 a)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국은 서면 통지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해당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통지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당사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를 보낸 당사국에 해당 사안을 명확히 하는 설명 또는 기타 서면으로 된 선언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취해졌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국내 절차 및 구제수단에 대한 언급이 가능한 한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 b) 수신 당사자가 최초 통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당사자 양측이 만족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어느 한 당사자는 위원회와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 c)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 수단을 동원하고 소진했음을 확인한 후에만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을 처리 한다. 구제 절차가 합리적인 기간을 초과한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적용 되지 않는다;
- d) (c)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본 규약에 명시된 의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련 당사국에게 중재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 e) 위원회는 본 조에 따른 통지를 심사할 때 비공개로 한다;
- f) (b)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사안에서 위원회는 (b)항에 언급된 관련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g) (b)항에 언급된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사할 때 대리인을 선임하고 구두 및/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h) 위원회는 (b)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i) 모든 사안에서 보고서는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⁹⁶

제 10 조. 조사

1. 위원회가 당사국이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중대하거나 조직적으로 위반했음을 나타내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에게 해당 정보의

⁹⁶ ICESCR, 선택의정서, 10 조.

환경권에 관한 국제 규약안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위해 해당 정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과 기타 이용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한 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위원회에 긴급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고 정당한 경우, 조사에는 당사국의 영토 방문이 포함될 수 있다.

3. 이러한 조사는 기밀로 진행되어야 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당사자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 조사 결과를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 및 권고 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5.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가 통지한 조사 결과, 의견 및 권고 사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6. 2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절차 결과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연례 보고서에 실기로 결정할 수 있다.⁹⁷

제 11 조. 후속 조치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본 규약 제 28조에 따른 보고서에 제 10조에 따른 조사 후에 취해진 조치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 10조 6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 관련 당사자에게 그러한 조사 후에 취한 조치에 대해 통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⁹⁸

⁹⁷ ICESCR, 선택의정서, 11 조.

⁹⁸ ICESCR, 선택의정서, 12 조.